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 안 번 호 22-64

제출년월일 : 2022. 8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옥외광고물 등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

나.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 근거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

2) 추진 필요성

-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바,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함
- 옥외광고, 건축, 전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

구분	세부내용
	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(연장포함)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
안전점검	풍수해 등 재난・재해 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 등
	추락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 광고물에 대해 즉각 조치 포함

라. 위탁기관 개요

1) 위탁기관

단체명	대표자	소재지	전화번호
(사)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	안재홍	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, 교평빌딩 503호	02-338-8886

2) 운영실적

- 허가·신고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실적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신고·허가 광고물 안전점검 (연장포함)	151	244	287	81
※ 대상 기간: 2019년 7월 ~ 2022년 6월				

- 풍수해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적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풍수해 대비 안전점검	490	418	452	422
동절기 대비 안전점검	158	159	175	하반기 예정

3)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

구분		수량	비고	
	사무실	보유	33 m²	
	업무차량	1대	1톤 포터트럭	
	사다리	2개		
	절연저항계	1개	누전(전열)점검용	
집기현황	망원경	1개		
	카메라	2개		
	컴퓨터	3개		
	복사기, 팩스	3개		
	공구세트, 줄자	2개		

4)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

자격증 종류	마포구지부 자격증 소지자 현황
건축산업기사	1명
전기분야	1명(배전전공 자격증)
옥외광고분야	1명(옥외광고사2급)

5) **타 자치구 위탁 현황**: 23개 자치구 (사)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, 마포구 및 강남구는 지부에 위탁

※구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

- 마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및 기간
 - 1)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2항(2021. 5. 6. 일부개정, 2022. 1. 1. 시행)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받아야 한다.
 - 2) 위탁기간 : 2022. 7. 1. ~ 2025. 6. 30.(3년)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2009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 재계약
-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구조례 별표3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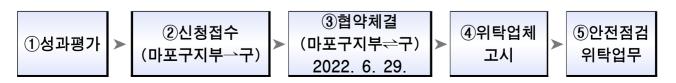
(단위: 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
도시안전과	
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	
선진광고문화 조성(옥외광고발전기금)	
광고물 개선사업	
201 일반운영비	48,000
01 사무관리비	48,000
1)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0,000,000원*2회	20,000
1)옥외광고물 안전점검 50,000원*560건	28,000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건축·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현 위탁기관은 해당 기술자격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자. 추진 과정



3. 참고사항: 관계법령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>

제9조(광고물 등의 안전점검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는 「형법」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>

제38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)

-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
- 2.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3. 건축 · 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, 검사요령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-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.
-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
-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(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되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사무실

- 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·건축·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(분 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)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제15조(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)

-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한 곳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위탁기 간, 위탁받을 자의 임무,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.
- ⑥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 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제21조(성과평가)

-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[별표 3]

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(제23조제1항제2호 관련)

광	구 분 고물의 종류	단위	기 준	수수료
	옥상간판과 건물 측·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간판, 높 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	개 개 ㎡	 ・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・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 미터이하 ・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	22,000원 45,000원 3,000원
2.	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 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면 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	개 개 ㎡	○ 연면적 3.5제곱미터이하○ 연면적 3.5제곱미터초과 10제곱 미터이하○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	15,000원 22,000원 3,000원
	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,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,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	개 개 ㎡	·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·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 미터이하 ·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산	15,000원 22,000원 1,500원
4.	현수막게시시설	개 개 ㎡	·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·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 미터이하 ·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산	22,000원 45,000원 2,000원
5.	기타 광고물등		·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	